

2025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

I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2845호
2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3. 제출일자 : 2025년 5월 26일
4. 회부일자 : 2025년 5월 29일

II. 제안이유

가.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, 지정기부사업 모금액 반영으로 기금 수입계획이 변경되고, 온기창고 ‘다채로운’ 프로젝트 사업, 지역상생 중장년층 창업지원 사업 등 기금 사업 도입으로 기금 지출계획이 변경되었음.

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서울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III. 주요내용

가. 전년도(2024년) 결산에 따라 수입계획 상 예치금 회수금액이 598백만

원에서 565백만원으로 33백만원 감소하였고, '24년 최종 모금액 및 지정기부사업 모금 목표액 50백만원을 반영하여 기부금 수입 목표를 338백만원으로 조정하였음.

나. 기금사업 추진을 위해 세부사업인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민간위탁금을 신설하고, 사무관리비에 기금사업비를 반영함.

다. 이에 따라 지출계획 상 '정책사업' 금액이 기존 142백만원에서 329백만원으로 증가하여 132.1% 변경되었고, 예치금 금액이 827백만원에서 582백만원으로 245백만원 감소하였음.

라. 기금운용계획 변경 상세 내역

[수입계획]

(단위 : 천원)

장/관/항/목	당 초 (A)	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 (B)	증 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합 계	979,998	921,244	△58,754	△6.0%
세외수입	381,490	355,591	△25,899	△6.8%
경상적세외수입	18,490	17,856	△634	△3.4%
이자수입	18,490	17,856	△634	△3.4%
공공예금이자수입	18,490	17,856	△634	△3.4%
임시적 세외수입	363,000	337,735	△25,265	△7.0%
기부금수입	363,000	337,735	△25,265	△7.0%
기부금수입	363,000	337,735	△25,265	△7.0%
보전수입등내부거래	598,508	565,653	△32,855	△5.5%
보전수입등	598,508	565,653	△32,855	△5.5%
예치금회수	598,508	565,653	△32,855	△5.5%

장/관/항/목	당 초 (A)	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 (B)	증 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예치금회수	598,508	565,653	△32,855	△5.5%

[지출계획]

(단위 : 천원)

정책/단위/세부/편성목	당 초 (A)	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 (B)	증 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합 계	979,998	921,244	△58,754	△6.0%
효율적 재정운영	141,900	329,321	187,421	132.1%
고향사랑기부제 운영	141,900	329,321	187,421	132.1%
고향사랑기부제 운영	141,900	329,321	187,421	132.1%
사무관리비 ○ 홍보비 등 33,000 ○ 지역상생 중장년층 창업지원 95,000	33,000	128,000	95,000	287.9%
기타보상금	108,900	101,321	△7,579	△7.0%
민간위탁금 ○ 온기창고'다채로움'프로젝트 100,000	-	100,000	100,000	신설
재무활동	827,098	581,923	△245,175	△29.6%
보전지출	827,098	581,923	△245,175	△29.6%
여유자금 예치	827,098	581,923	△245,175	△29.6%
일반예치금	827,098	581,923	△245,175	△29.6%
행정운영경비	11,000	10,000	△1,000	△9.1%
기본경비	11,000	10,000	△1,000	△9.1%
기금관리비	11,000	10,000	△1,000	△9.1%
사무관리비	11,000	10,000	△1,000	△9.1%

I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이준석)

1. 변경안의 개요

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고, 지출계획 변경 및 신규사업 편성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¹⁾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)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됨.

2. 고향사랑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

- 고향사랑기금은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의 시행²⁾으로 ‘고향사랑기부제’가 도입되면서, 모금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과 고향사랑기금을 통한 주민 복리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자 2023년에 설치된 기금임³⁾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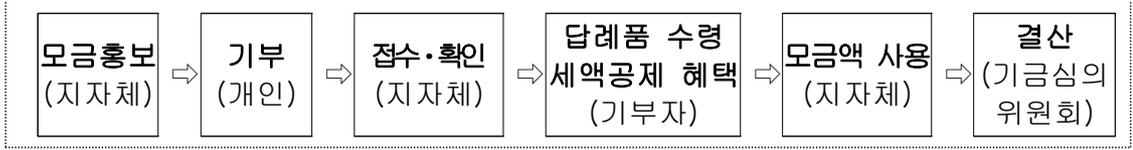
< 고향사랑기부제 개요 >

- ▶ 기부주체 : 개인(법인 불가)
- ▶ 기부대상 :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
(예시)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, 거주지 외 여러 지역 선택 가능
- ▶ 기부 상한액 : 1인당 연간 2,000만원
- ▶ 세액공제 :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, 10만원 초과 시 16.5% 공제
(예시)100만원 기부 시 24.8만원 공제-10만원 + 초과분 90만원의 16.5%인 14.8만원)
- ▶ 답례품 : 지자체는 기부금의 30%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 가능
지역에서 생산·제조한 물품(농·수·축 임산물, 제조물품 등)
지역에서 통용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(고향사랑 상품권 등)
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물품(숙박·관광 등 서비스 상품)
- ▶ 위반행위 처벌 : 기부강요·모금방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
- ▶ 운영 절차

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

2) 제정 : 2021.10.19. 시행 : 2023.1.1.

3)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가 시행됨(2022.12.30. 제정, 2023.1.1. 시행).



- 고향사랑기금의 재원은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,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,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됨⁴⁾.
-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, 전년도말 조성액은 5억 9천 9백만원, 수입 계획액은 3억 8천 1백만원, 지출계획액은 1억 5천 3백만원이고, 2025년도말 조성액은 8억 2천 7백만원임.

<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조성 계획 >

(단위 : 천원)

'24년도말 조성액 ㉠	'25년도 기금운용계획			'25년도말 조성액 ㉡=㉠+㉢
	수입㉢	지출㉣	증감 ㉤=㉢-㉣	
599	381	153	229	827

- 그러나 2024년도 결산 결과, 2024년도말 조성액은 기부금 수입이 감소하여 목표 모금액(330백만원)에 미달하면서 5억 6천 6백만원이 됨.

< 2024년도 기금 조성 총괄 >

(단위 : 천원)

'23년도말 조성액 ㉠	2024년도 기금 조성 총괄			'24년도말 조성액 ㉡=㉠+㉢
	수입㉢	지출㉣	증감 ㉤=㉢-㉣	
298	299	31	268	566

4) 「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1항

3. 변경안의 주요 내용

-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4년도 결산 결과, 기부금이 목표치에 미달됨에 따라 기존 계획에서 기부금 수입 및 이자수입을 축소하고, 이에 따라 지출 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임.

< 2025년 고향사랑기금 수입 및 지출 변경 내역 >

(단위 : 천원)

수입계획				지출계획			
구 분	당초 ㉠	변경 후 ㉡	증감 (당초대비) ㉢ = ㉡ - ㉠	구 분	당초 ㉠	변경 후 ㉡	증감 (당초대비) ㉢ = ㉡ - ㉠
합 계	979,998	921,244	△58,754	합 계	979,998	921,244	△58,754
이자 수입	18,490	17,856	△634	고향사랑기부제 운영(홍보, 사업, 답례품, 민간위탁금)	141,900	329,321	187,421
기타 수입	363,000	337,735	△25,265	보전지출 (여유자금 예치)	827,098	581,923	△245,175
예치금 회수	598,508	565,653	△32,855	행정운영경비	11,000	10,000	△1,000

- 수입계획의 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음.
 - 이자수입은 정기예금의 예치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당초 계획액 1천 8백 5십만원 대비 6십만원(3.4%)이 감소한 1천 7백 9십만원임.
 - 기타수입(고향사랑기부금 수입)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, 기부금이 목표액인 3억 3천만원에 미달한 2억 8천 8백만원이고, 여기에 지정기부사업⁵⁾ 모금 목표액 5천만원을 반영하여 총 수입액을 3억 3천 8백만원으로 변경하였음.

5) '지정기부사업'은 기부자가 기부하고자 하는 지역의 특정 목적 사업에 기부하는 것으로, 기존의 기부 방식과는 다르게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직접 지정해 기부할 수 있음(출처 : 대한민국 정책브리핑).

- 예치금회수는 2024년도 결산 결과 예치금을 감액 예치함에 따라 5억 6천 6백만원임.

<고향사랑기금 수입계획 변경 내역>

(단위 : 천원)

과목	당초계획 (A)	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 (B)	증 감 (C=B-A)	증감률 (D=C/A)	주요내역
계	979,998	921,244	△58,754	△6.0%	
이자수입	18,490	17,856	△634	△3.4%	정기예금 예치 규모 감소로 17백만원으로 감액
기부금수입	363,000	337,735	△25,265	△7.0%	기부금수입 337,735 - 일반기부금 287,735 - (지정기부) 고향사랑인재육성장학지원 50,000
예치금회수	598,508	565,653	△32,855	△5.5%	'24회계연도 결산 결과 목표액(330백만원) 미달성으로 감액

○ 지출계획의 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음.

-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은 답례품 제공 비용(기타보상금)을 감액하는 한편, 중장년층 창업지원사업(9천 5백만원)과 온기창고 사업(1억) 2건에 대하여 1억 9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3억 2천 9백만원임.
- 재무활동(예치금)은 전년도 결산 결과 기부금의 목표 모금액 미달성과 신규사업의 편성(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항목에 반영)을 반영하여 당초 계획액 8억 2천 7백만원 대비 2억 4천 5백만원이 감소한 5억 8천 2백만원임.
- 행정운영경비(기금관리비)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답례품선정위원회 운영비 등을 포함하는 항목으로, 1백만원 감액한 1천만원임.

<고향사랑기금 지출계획 변경 내역>

(단위 : 천원)

과목	당초계획 (A)	기금운용계 획 변경(안) (B)	증 감 (C=B-A)	증감률 (D=C/A)	주요내역
계	979,998	921,244	△58,754	△6.0%	
고향사랑 기부제 운영	141,900	329,321	187,421	132.1%	
사무관리비	33,000	128,000	95,000	287.9%	- 홍보비 등 33,000 - 지역상생 중장년층 창업 지원 95,000
기타보상금	108,900	101,321	△7,579	△7.0%	
민간위탁금	-	100,000	100,000	신설	- 온기창고‘다채로움’프로 젝트 100,000
재무활동	827,098	581,923	△245,175	△29.6%	
예치금	827,098	581,923	△245,175	△29.6%	
행정운영경비	11,000	10,000	△1,000	△9.1%	
기금관리비	11,000	10,000	△1,000	△9.1%	

- 한편 수입 계획 변경과 관련하여, 지방기부사업인 ‘고향사랑 인재육성 장학지원’은 지방 출신이면서 서울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저소득 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임.

< 지정 기부사업 >

① **고향사랑 인재육성 장학지원**

- ▶ 대 상 : 지방출신으로 서울소재 대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(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 학생
※ 지원인원 : 15명 내외(2학년 이상 10명, 신입생 5명)
- ▶ 지원내용 : 성적·학업의지가 우수한 학생 선발하여 학기별 장학금·생활비 지원
※ 연간 최대 4,000천원(학업장려장학금)
- ▶ 모금기간 : '25.7월~12월(6개월) ※ 사업기간 : '26. 3월~12월
- ▶ 모 금 액 : 50백만원

- 동 사업은 기부자가 사업을 직접 지정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의 공익성과 취지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, 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 제고와 홍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- 다음으로 동 변경안의 지출 계획에는 ‘지역상생 중장년층 창업지원’ 과 ‘온기창고 다채로움 프로젝트’ 가 신설되었음.

< 신규 기금 사업 >

① 지역상생 중장년층 창업 지원

- ▶ 대 상 : 서울시 거주 중장년 20인 내외(40세 이상~65세 미만)
- ▶ 지원내용 : (중도)퇴직·창업자가 지방특산물을 활용한 창업 추진 시, 창업교육 및 창업자금 등 지원
 - 오리엔테이션(창업가 특강, 지역조사방법론 교육, 창업트렌드, 지역사회 기여방안 등)
 - 지역자원조사 및 지역캠프(간담회) 운영, 초기창업(1년 이하) 대출 연계 및 전문가 컨설팅
 - 사업화과정 콘테스트 및 우수팀 3팀 선정하여 판로지원
- ▶ 사업기간 : '25.7월~12월(6개월)
- ▶ 사 업 비 : 95백만원 (사무관리비)

② 온기창고 ‘다채로움’ 프로젝트

- ▶ 추진목적 : 쪽방주민 수요에 맞는 지방 농·수산물 지원을 통해 주민건강 증진
- ▶ 지원대상 : 서울시 쪽방주민 2,240명(홀몸 어르신, 장애인 등 취약계층)
- ▶ 추진내용 : 고향 농수산물 지원(월1회),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(1회), 고향 일손돕기 가능활체험(1회)
 - (고향 농수산물 지원) 수요조사 후 제철 과일·채소 위주 구매
 - (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) 공동식사프로그램, 제철음식 요리교실 운영
 - (고향 일손돕기) 30여명 규모로 농촌 일손돕기 또는 체험프로그램 실시
- ▶ 사업기간 : '25.7월~12월(6개월)
- ▶ 사 업 비 : 100백만원 (민간위탁금)

- 동 사업들은 그동안 기금운용이 대부분 예치금 중심이었던 것과 달리, 고향사랑기금을 실제 지역사회 복리 증진을 위한 목적 사업에 편성하였다는 점에서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기금 도입의 취지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.
- 다만 해당 사업들은 지방 특산물 활용, 농촌 체험, 농수산물 지원 등을 통해 타지역에 수혜가 발생하는 방식으로 추진됨으로써, 서울시의 발전을 기대하며 기부금을 낸 기부자들의 취지와 부합된다고 보기에 어려우므로 기금의 취지에 적합한 사업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4.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적정성 여부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⁶⁾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20%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.
- 동 변경안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(민간위탁금 신설)과 재무활동(△29.6%)이 각각 지출금액의 20%를 초과한다는 점에서 절차상 별도의 문제는 없음.
- 또한 동 변경안에 포함된 행정운영경비는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3항⁷⁾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 모집·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(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이내)에서 적법하게 편성된 항목으로, 법적·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한편 2025년 기부금 수입에 대한 당초 계획은 2024년도 목표 모금액인 3억 3천만원에 대하여 10% 인상한 3억 6천 3백만원을 계상한 것으로, 이는 연말 소득 공제 혜택 등으로 인한 홍보 효과 등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상향 설정한 것임.
- 그러나 2024회계연도 실제 모금액이 목표액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예치금 규모가 감소하였고, 이에 따른 이자 수입도 줄어들어 총 수입이 당초 계획대비 6% 감소하였음.
- 이와 같은 수입의 감소는 기금 조성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우려가 되는

6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7)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)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(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)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.

부분으로, 제도 초기단계임을 감안하더라도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모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.

- 특히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공공성에 부합하는 콘텐츠 개발, 기부자 홍보 전략, 민간협력 유치 등을 통해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고, 지정기부사업의 확대 및 기부성과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기금의 신뢰도와 모금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.
- 결론적으로 본 변경안은 법적 요건과 정책적 필요성이 충족된 타당한 조정안이나, 향후 기금의 안정적 조성과 운용을 위해서는 기부금 모집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실행계획 수립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.

입법조사관	연락처
김수은	02-2180-8064